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·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, 과학기술·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,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, “방송통신위원회”를 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”로, “원자력안전위원회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통계청, 우주항공청, 특허청”을 “원자력안전위원회, 국가데이터처, 지식재산처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우주항공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환경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, 고용노동부, 성평등가족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법령해석국) ① ~ ⑥ (생략)	제8조(법령해석국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, 국토교통부, <u>중소벤처기업부</u> , <u>방송통신위원회</u> ,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위원회, <u>원자력안전위원회</u> 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통계청, 우주항공청, 특허청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(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)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,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 <u>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</u> ----- -- <u>원자력안전위원회</u> , 국가데이터처, 지식재산처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우주항공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<u>환경부</u> , <u>고용노동부</u> , 여성가족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국가유산청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질병관리청,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	⑧ ----- ---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 , <u>고용노동부</u> , <u>성평등가족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토,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 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 항을 분장한다.	----- -----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